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94. 9. 8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4. 8. 31
- 다. 회부일자 : 94. 8. 31
- 라. 상정일자 : 94. 9. 7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 달서구의 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안 제3조, 제4조)
- ▶ 장애와 상해의 기준(안 제5조)
- ▶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안 제9조)
 - 위원정수 :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
 - 위 원 장 : 부구청장
 - 위원 위촉대상
 - 구의회의원 1인(의장의 추천에 의함)

- 구분청 관련국장 1인
- 의무직 공무원 1인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 심의회 기능(안 제10조)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 지급금액,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 심의회 위원 임기 : 2년(연임가능)

▶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안 제13조~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백창기)

본 조례는 내무부 준칙을 준용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준칙중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4. 토론요지

직무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비회기중의 의정활동시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직무범위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개념이 불명확한 자구를 수정토록 바람

5. 수정안 요지

제2조 1호와 제4조 1항 및 제15조 1항의 개념이 불명확한 자구를 수정함(신구 조문대비표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반대 : 없음

7. 첨부 :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부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1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법 제53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회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치료비 전액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동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동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직할시달서구에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의원 1인
2. 구본청 관련 국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구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 금액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8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동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2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① 동조제 13조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② 심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3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제2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리기간
	년 월 일				즉 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 상 금 청 구 내 용	구 분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등급) <input type="checkbox"/> 상해			
	금 액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실 여 부 및 상 태 등 경 위 조 사 내 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 판 정 > < 이 유 > < 심 의 위 원 서 명 >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인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귀하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호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경우는 시의회의원”을 “경우는 시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안 제15조 제1항의 “구좌에”를 “계좌에”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당 초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p> <p>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 (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u>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u>)를 말한다.</p>	<p>제2조(정의)</p> <p>1.<u>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에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u></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u>시의회의원</u>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p> <p>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u>시의회의원</u>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p> <p>1.<u>시도의회의원</u>.....</p> <p>2.<u>시도</u> <u>의회의원</u>.....</p>
<p>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u>구좌</u>에 입금한다.</p>	<p>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p> <p>.....<u>계좌</u>에.....</p>